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계급	직렬	직류	선발인원	과목수	시험과목(제1·2차 시험 병합실시)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		2개	8명		
	7급	수의	수의	5명	3과목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9급	운전	운전	3명	2과목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시험시간(수의7급 3과목: 10:00 ~ 11:00 / 운전9급 2과목: 10:00~10:40)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시험 방법

가. 시험방법

①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별 20문항)

② 제3차 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아래와 같으며, 평정요소별 상·중·하로 종합평가합니다.

※ 면접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검증을 위하여 운전직 면접시험 과정에 45인승 대형버스 운행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며, 장소 및 일정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 면접시험 평정요소 >

- | | |
|---------------------|-----------------|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나. 합격자 결정방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참고

※ 최종 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2022. 1. 4.>
 -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나. 거주지 제한: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 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 내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단, 수의7급 거주지 제한 요건은 아래와 같음

계급	거주지 제한
수의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관할 행정구역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잔여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이면 충족함

※ (예시) 2007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5일까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00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응시가능(현재 세종시 관할 행정구역이며, 36개월 이상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일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으로 2012.7.1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된 지역임

- 2)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다. 성별: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계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20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9급	18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

마. 응시 자격요건: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

계급	직렬(직류)	자격증(면허증) 제한
7급	수의(수의)	수의사
9급	운전(운전)	제1종 운전면허(대형)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현재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발급 신청일이 아닌 자격·면허 발급(취득) 일을 기준으로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접수: 2.1.(수) ~ 2.3.(금) <취소: 2.1.(수)~2.6.(월)>	필기	2.14.(화)	2.25.(토)	3.10.(금)
		면접	3.10.(금)	3.22.(수)~ 3.23.(목)	4.4.(화)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 명단 발표, 시험 성적 안내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www.sejong.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서류 제출일)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일시/장소 등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서류 제출일에 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됨)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www.sejong.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원서접수 고객센터 안내전화번호: ☎ 1522-0660)

2) 접수시간: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종료)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 (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다. 응시원서 사진 파일 규격: 파일 형식 JPG, 해상도 100dpi 이상, 크기 3.5cm × 4.5cm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시험 당일 본인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 사항(인적 사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수정 불가합니다.(단, 가산점 관련 등록은 필기시험 전 2.24.(금)까지 수정 · 입력 가능)
※ 원서접수기간 중 결제 완료 이후 시험 직렬(직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제 취소 후 원서 작성 및 응시 수수료 결제를 다시 해야 함
- 2)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3) 응시표는 2월 14일(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 4)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자격 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5)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6)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6 가산 특전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단위별로 9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55)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1) 해당분야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직렬(직류)별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2) 직렬별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3)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가.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험정보」 란에 공고합니다.
- 다. 응시원서 접수 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등의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 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바.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 시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수정액,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사용한 경우 당해 문항은 무효처리합니다.
- 사. 모든 과목의 시험문제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체출제로 시험 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아.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합격자를 결정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 법규를 적용합니다.
- 차.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발생,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파.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운영지원과(교육고시담당, ☎044-300-30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